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재난안전과-10541
등록일자	2016.5.24.
결재일자	2016.5.25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재난관리팀장	재난안전과장	안전교통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협조자					

「2016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 종합 추진」

확대간부회의 현안사항 토론내용 검토결과 보고

■ (내용분석) 화재안전 홍보, 소화기 비치, 피난시설 설치 및 화재안전 매뉴얼 부착 등에 관한 제안이 대다수를 차지 : 전체 18건

-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나 법령상 의무사항인 내용을 대부분 제안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내용은 부족

■ (기존시행) 시행 중이거나 시행 완료된 건 : 13건

- 시행 중이더라도 추가적인 추진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대추진
- 시행 중 10건(확대추진 4건)/ 시행 완료 3건

■ (대안제시) 제안내용이 법률 상 의무사항인 건 : 3건

- 의무사항이더라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안 제시
- 일원본동의 <아파트 전세대 소화기 비치 사업> 횡단 전개 : 각 동별 추진
- 피난약자 대상 아파트 자체 특별관리 협조 요청 → 아파트 관리사무소
- 실효성 있는 아파트 자체 훈련 실시 요청 : → 아파트관리사무소

■ (추진제외) 법령 상 불가 및 불필요한 건 : 2건

- 대피공간(방화문) 설치비 지원 : 법령상 불가
-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보 및 추가지원 검토 : 불필요

■ (결론) 실행 가능한 대다수의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이며, 확대(보완)사업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화재안전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강 남 구
(재 난 안 전 과)

「2016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 종합 추진」

확대간부회의 현안사항 토론내용 검토결과 보고

1992년 10월 이전 허가받아 지어진 「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화재 안전 개선방안」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토론에서 제시된 제안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

I 토 론 배 경

■ 강남구 아파트 현황

(2016.01월 현재)

구분	단지수 (개소)	동수 (동)	세대수 (세대)	비율 (%)	비고
전체	260	1,550	118,470	100	20세대 이상 아파트
피난시설 미 설치	83	850	68,458	57.8	'92.10.월 이전 허가된 아파트

■ 문제점

- 1992년 10월 이전 허가받은 아파트엔 피난시설이 없어 화재에 매우 취약
 - 아파트 피난시설 : 경량칸막이, 대피공간, 하향식 피난구 등
- 그러나, 화재안전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부족
 -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 및 홍보 미흡
 - 기존 아파트 피난시설 의무설치 법제화 곤란 및 피난시설 설치비용 과다

II 토 론 개 요

■ 주 제 :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방안

- 세부 토론내용은 [붙임문서 1] 토론자료 참조

■ 일 시 : 2016.04.25.(월) 확대간부 회의 시

■ 제안내용 발표 : 안전교통국장 등 12명

■ (내용분석) 화재안전 홍보, 소화기 비치, 피난시설 설치 및 화재안전 매뉴얼 부착 등에 관한 제안이 대다수를 차지 : 전체 18건

- ※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나 법령상 의무사항인 내용을 대부분 제안하여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한 제안내용은 부족
- 화재안전 홍보(5건), 소화기 비치(3건), 피난시설 설치(2건), 안내문 및 매뉴얼 부착(2건), 기타(6건)

■ (기존시행) 시행 중이거나 시행 완료된 건 : 13건

- ※ 시행 중이더라도 추가적인 추진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대추진
- 시행 중 10건(확대추진 4건)/ 시행 완료 3건
- 확대추진 내용
 - 교육 및 홍보 전 부서 확대 추진
 - 실제 대피사례 동영상 추후 각 부서별 교육 및 홍보 시 활용 추진
 -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권장 홍보 추진
 - 예산지원 방안 등 포함하여 법령개정 건의 등 추진

■ (대안제시) 제안내용이 법률 상 의무사항인 건 : 3건

- ※ 의무사항이더라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안 제시
- 일원본동의 <아파트 전세대 소화기 비치 사업> 횡단 전개 : 각 동별 추진
 - 아파트는 소화기 의무비치(소방법)
 - 공동주택 지원사업 해당 안됨
- 피난약자 대상 아파트 자체 특별관리 협조 요청 → 아파트 관리사무소
 - 아파트관리사무소 소방시설 점검 의무 실시(주택법)
- 실효성 있는 아파트 자체 훈련 실시 요청 : → 아파트관리사무소
 -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훈련 의무 실시(소방법)

■ (추진제외) 법령 상 불가 및 불필요한 건 : 2건

- 대피공간(방화문) 설치비 지원 : 법령상 불가
 - 「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조례」의 지원범위(대상) :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→ 대피공간(방화문)은 전용시설물임(비 지원대상)
-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확보 및 추가지원 검토 : 불필요
 - 아파트는 감지기 의무설치 대상(소방법)/ 모든 아파트에 감지기 설치되어 있음

■ (결론) 실행 가능한 대다수의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이며, 확대(보완)사업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화재안전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IV

제안내용 및 검토의견

■ 전체 제안건수 : 18건(제안자 12명)

■ 내용별 분류

화재안전 홍보	소화기 비치	피난시설 설치	매뉴얼 부착	기타
5건	3건	2건	2건	6건

■ 시행여부별 분류

시행 완료	시행 중	시행예정	불가	불필요
3건	10건 (확대추진 4건)	3건 (대안추진)	1건	1건

■ 제안내용별 검토의견(반영계획)

구분	제안내용	검토의견(반영계획)	비고
홍보 (5건)	(안전교통국장) 주민관심도 증가 및 관련기관·기업과 사업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→ 향후 부서별 행사시 화재안전 동영상 상영 및 홍보	▶ (전 부서) 교육 및 홍보 확대 추진 - 타 기관 추진 유사사업 연결 등 협조 - 교육 및 홍보 실적(월별) 제출 ※ (현재) 재난안전과, 주택과, 각 동 → (확대) 전 부서	시행중 (확대 추진)
	(교통정책과장) 실제 대피사례 동영상 활용 홍보	▶ 실제 대피사례 및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홍보 동영상 등 활용 교육 실시 - 아파트 동별 대표자 등 관리자 교육 시 실시 - 추후 각 부서(동)별 교육 및 홍보 시 활용 추진	
	(개포2동장)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홍보	▶ 조리 중 자리를 비우지 않고,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 확인 등을 생활화 홍보 ▶ 가스 자동 차단기 설치 권장 홍보 추진	
	(도시환경국장) 피난시설 필요성 대시민 홍보	▶ <아파트 화재안전 스티커>, <화재안전 매뉴얼> 및 <홍보 동영상> 등 제작 → 각종 교육 및 홍보 시 활용 - 사전점검 및 대피공간 설치 권장 등 - 현재 피난시설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 방법 포함	시행중
	(주택과장) 현재 피난시설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(92년 이후 아파트)에 대한 피난시설 관리방안 홍보		

구분	제안내용	검토의견(반영계획)	비고
소화기 (3건)	(교통정책과장) 소화기 등 각 가정 비치 및 지원 방안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일원본동의 <아파트 전세대 소화기 비치 사업> 횡단 전개 : 각 동별 추진 ▶ 소화기는 각 세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「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범위(대상)에 해당되지 않음 : 지원 불가 ※ 소방법령 상 소화기는 아파트에서 의무 비치 대상임 	대안 추진
	(개포2동장)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각종 교육 및 홍보 시 <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>과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방법 홍보 	시행중
	(지역경제과장) 소화기 비치 및 관리방법 홍보		
피난 시설 (2건)	(교통정책과장) 피난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개정 (개인 비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 고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법률자문 실시 완료 → 지역구 의원 다각적 협조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05년 개정 규정 소급적용 불가 - 다만, 모든 아파트에 피난시설 의무설치토록 법령 자체를 개정하는 사항은 법리상 가능하나 - 법리상 가능여부 외 현실적 여건, 개정이후 실효성 및 부작용, 관계기관 의견,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는 접근 필요 ▶ 법령개정 요청 시 예산지원 방안 등 포함하여 추진 	시행중 (확대 추진)
	(총무과장) 대피공간 설치가 필요(방화문 설치) →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설치비 지원 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범위(대상)에 해당되지 않음 : 지원 불가 - 「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에 관한 조례」의 지원 범위(대상) : 공동체 지원사업,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	불가
안내문 매뉴얼 (2건)	<p>(건축과장) 대피방법에 대한 인지 중요 → 대피방법 매뉴얼(안내문) 각 가정 등 부착</p> <p>(기획경제국장) 외출 시 가스·전기시설 확인 중요 → 점검표(안내문) 각 가정별 부착 방안 검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아파트 화재안전 스티커>를 현관문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토록 아파트 전체 세대에 배부(12만매) - 화재시 안전한 대피요령, 평상시 대비요령, 가스·전기 시설 점검(확인) 내용 포함 	시행 완료

구분	제안내용	검토의견(반영계획)	비고
기타 (6건)	(세곡동장) 장애인 노인가정 등 특별관리 주택 현황 파악 → 정기점검 등 관리 시행	▶ 피난약자 대상 아파트 자체 특별관리 협조 요청 (→ 아파트 관리사무소) ※ 인력, 시간 및 전문성 부족 등 행정기관(주택과 및 각 동)에서 추진 곤란 ▶ 아파트관리사무소 소방시설 점검 의무 실시(주택법)	대안 추진
	(일원1동장) 관 주도 훈련 한계 → 자체 훈련 실시토록 아파트 관리 규약 변경 검토 (추가적으로 법제화 검토)	▶ 아파트 자체 훈련시 입주민 참여 매우 저조 → 입주민 참여율을 높여 실효성 있는 자체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요청 ※ <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> 활용 →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 ▶ 아파트는 연 1회 이상 훈련 의무 실시(소방법) ※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	대안 추진
	(도시환경국장) 설문조사 실시(주민참여)	▶ 아파트 피난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 실시 - 아파트 동별 대표자 등 관리자 교육 시 (상반기 2회 실시 완료/ 하반기 실시 예정) ※ 상반기 조사결과 : 주민 자발적 피난시설 설치 유도 정책 추진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	시행중
	(개포4동장) 옥상 대피방법 안내 및 옥상 개방	▶ 전체 세대에 배부한 <아파트 화재안전 스티커>에 옥상 대피방법 포함 ▶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"비상문 자동개폐장치" 설치 등 권고 → 홍보 및 교육 실시(강남소방서) ※ 2016. 2. 29 이후 신규 주택건설 사업대상부터 의무 적용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	시행중
	(도시환경국장)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시범사업의 안전성 및 실효성 확보 → 전문가 검토의견 수렴 시행	▶ 전문가 검토 완료 - 수막형성 방화문의 내화성능 및 품질 검증 (한국건설기술원, 2014.10.11.) ※ 문의 수막형성 장치 : 특허 등록 ※ 대피공간용 화장실 시스템 : 특허 출원 ※ 신기술지정 신청(국토교통부) : 2015.08.31.	시행 완료
	(개포4동장) 단독 경보형 연기감지기 확보 필요 → 추가 지원 검토	▶ 아파트는 소방법령상 감지기 의무 설치 대상임 → 모든 아파트에 감지기 설치되어 있음 ※ 기존 완공된 모든 주택(아파트 제외)는 2017.02.04.까지 단독 경보형감지기를 구획된 실(침실, 거실, 주방 등)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(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)	불필요

V

향 후 계 획

■ 아파트화재안전 개선사업 계획 변경(보완)

- 토론 시 제안된 내용 반영 : 확대추진 4건, 대안추진 3건

■ 전(全)부서 협조 요청

- 교육 및 홍보 확대추진 : 전(全)부서
- 일원본동의 <아파트 전세대 소화기 비치 사업> 횡단 전개 : 각 동별
- 피난약자 대상 아파트 자체 특별관리 협조 요청(→ 아파트관리사무소) : 주택과
- 실효성 있는 아파트 자체 훈련 실시 요청(→ 아파트관리사무소) : 주택과

- 붙임 1) 확대간부회의 토론자료 1부.
2) 제안내용(제안자별) 1부. 끝.